

※ 아래 자료는 연구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공식 번역이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제7절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2022년 신설]

제43조의1 자신의 서비스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면책 받고자 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이용자가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여 조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취소한다는 공지를 하여야 한다. 또한 43조의2, 43조의3, 43조의4, 43조의5의 각 서비스의 형태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2022년 신설]

제43조의2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정보 전달의 중개인이자 다른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통신이 가능한 서비스 제공자는 제43조의1에 따라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1) 컴퓨터 데이터를 전송하는 발신자가 아니어야 하며,
- (2) 컴퓨터 데이터를 직접 선택하지 않고, 자동화된 기술 프로세스를 통해 컴퓨터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고
- (3) 컴퓨터 데이터를 누가 받을지 정하지 않아야 하나 자동 응답의 경우는 제외하며
- (4) 컴퓨터 데이터를 컴퓨터로 보낼 때 수정 및 변경하지 않고
- (5) 컴퓨터 데이터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컴퓨터 정보의 사본을 일시적으로만 저장하거나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접근을 할 수 있는 방식의 컴퓨터 네트워크에 저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필요 이상의 기간동안 컴퓨터 정보 사본을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2022년 신설]

제43조의3 컴퓨터 정보를 일시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제43조의1에 따라 면책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1) 자동화된 기술 프로세스를 통해 컴퓨터 정보를 임시로 저장하며,
- (2) 컴퓨터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하고,
- (3) 컴퓨터 데이터를 시스템에 저장해 두거나 컴퓨터 네트워크는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 (4)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서 널리 보급된

기술의 사용을 막지 않아야 하며,

(5) 웹사이트에 있는 컴퓨터 데이터에 접근을 위해 규정된 조건을 따라야 하며,

(6) 일시적으로 저장된 컴퓨터 데이터를 컴퓨터 시스템 및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가져올 때 컴퓨터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지하는 사실을 알게 될 시 지체 없이 해당 컴퓨터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중지하고 컴퓨터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에서 중단하여야 하며, 법원이 웹사이트에 대해 그러한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2022년 신설]

제43조의4 데이터를 보관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면책받기 위해 제43조의1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 서비스 이용자의 명령에 따라 컴퓨터 데이터를 보관하여야 하며, 시스템 내부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네트워크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데이터임을 알게 되었을 때 해당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막고 시스템에서 중단하여 컴퓨터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아야 한다.

(2)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통제할 권리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이를 이용해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3) 통지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름, 주소,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의 서비스 제공자의 세부 통지를 받는 사람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표기하여야 한다. [2022년 신설]

제43조의5 컴퓨터 데이터 검색 서비스 제공자는 제43조의1에 따라 면책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 컴퓨터 데이터를 검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컴퓨터 데이터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컴퓨터 데이터임을 알게 된 경우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인증하는 과정 또는 컴퓨터 데이터의 출처로부터 저작권 침해가 되는 시스템 및 컴퓨터 네트워크를 중단하여, 해당 데이터 및 출처에 대한 접근을 막아야 하며 이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알게 된 직후 지체없이 바로 시행해야 한다.

(2)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통제할 권리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이를 이용해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

(3) 통지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름, 성, 주소,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등의 서비스 제공자의 세부 통지를 받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표기하여야 한다. [2022년 신설]

제43조의6 저작권 소유자는 저작권 침해가 있다고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 제43조의4, 제43조의5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의 컴퓨터 네트워크의 저작권 소유자 저작권 또는 출처를 침해했다고 주장되는 컴퓨터 데이터를 알아보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저작권 소유자는 해당 컴퓨터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로부터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알려 서비스 제공자의 시스템 및 컴퓨터 네트워크를 중단하도록 알려거나, 컴퓨터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인증과 컴퓨터 데이터 연결을 중단시킬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저작권 소유자는 제6장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예외 조항을 고려해야 하며 통지는 서면으로 작성 또는 전자 시스템을 통해 작성할 수 있고 최소한의 다음과 같은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1) 이름, 성, 주소,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의 서비스 제공자의 세부 통지를 받는 사람이 쉽게 연락할 수 있는 위치에 표기한다.
- (2)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간주하는 저작물
- (3) 저작권이나 저작권 출처가 침해가 된 컴퓨터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스템이나 컴퓨터 네트워크로부터 중단시키거나 컴퓨터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제43/5조에 따른 컴퓨터 데이터에 저작권 침해되었다고 여겨지는 데이터의 출처와 연결 지점을 기록하기 위한 것과 서비스 제공자가 출처와 연결 지점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컴퓨터 데이터는 충분하고 합리적인 세부 사항이 있어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출처 또는 연결 지점을 지정할 수 있다.
- (4) 상기 요청이 사실임을 나타냄
- (5) 저작권 소유자의 서명 또는 전자 서명

서비스 제공자가 1항에 따라 통지를 받았을 때,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로 주장되는 컴퓨터 데이터 및 출처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컴퓨터 네트워크 연결 지점의 시스템 및 서비스 제공자의 컴퓨터 네트워크로부터 중단하도록 하고, 컴퓨터 데이터 및 서비스 제공자의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컴퓨터 데이터의 연결 지점에 대한 접근을 지체없이 차단하며, 서비스 이용자에게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에 대하여 해결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알린다.

제 2항에 따라 알림에 대해 충분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는 (1), (2), (3)에 따른 내용이 부족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 최대한 빨리 연락하거나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라도 저작권 소유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위해 연락하도록 한다. 알림에 대한 충분한 내용이 없을 시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시스템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알거나 알고 있다는 근거가 있다고 간주할 수 없다.

선의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는 운영의 결과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2022년 신설]

제43조의7 제43조의6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서비스 사용자는 서면 또는 전자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최소한 다음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이름과 성 또는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 등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연락할 수 연락처

(2) 시스템이나 서비스 제공자의 컴퓨터 네트워크로부터 중단되거나 접근이 차단된 컴퓨터 데이터 및 중단되기 전의 컴퓨터 데이터의 출처나 접근이 차단된 서비스 제공자의 컴퓨터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43/5조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중단이 된 참조, 연결 지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접근이 차단된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을 알린 경우는 제외한다.

(3) 컴퓨터 데이터 및 참조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연결 지점과 서비스 제공자의 컴퓨터 네트워크 혹은 잘못된 접근 및 실수로 인한 접근에 대해 차단하는 설명문

(4) 서비스 이용자의 서명 또는 전자 서명

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완전한 내용을 포함해 이의 제기를 통보 받을 시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소유자에게 사본을 최대한 신속하게 전달하고,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후에 컴퓨터 데이터 또는 출처와 연결 지점에 대해 접근을 제한을 해제하거나 데이터를 복구한다는 것을 통보한다.

제2항의 기간이 만료된 후,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이용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통보 하지 않은 경우 15일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하거나 컴퓨터 데이터 또는 출처와 연결 지점에 대해 접근을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43조의8 허위 정보를 이용해 마치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하거나 반박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컴퓨터 데이터 및 출처 또는 연결 지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서비스 제공자의 컴퓨터 데이터가 있는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중단하도록 하여 해당 컴퓨터 데이터 및 출처 또는 연결 지점에 대한 접근이 중단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허위 통지 또는 반소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022년 신설]